국회운영위원회

우 150-701 영등포구 여의도동 1 / 전화(02)788-2900 / 전송(02) 788-3351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계인 담당자 김성대

문서번호 운영 제 **133**호

시행일자 2001. 11. 14. ()

수신 의 장 참조

취급		위	원	장
보 존	년	/	r l	6
수 석 전문위원	No	0	λζ,	5
심의관	子			/
조사관	و			

제목 국회기록물관리규칙안 심사보고

행관 제200호('01.6.20)로 회부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안에 대하여 제225회 국회(정기회) 제10차 국회운영위원회('01.11. 【3】에서 심사한 결과,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.

붙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안 1부. 끝.

국 회 운 영 위 원 장

국회기록물관리규칙안

제안이유

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그 훼손·멸실을 방지하고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제정·공포(1999. 1. 29, 법률 제5709호)됨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사무처의 국회기록보존 소로 함(안 제2조).
- 나. 소속기관의 총무과에 자료관을 두되,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기록보존소가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함(안 제3조).
- 다.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등으로 하고, 국회기록보존소에는 2인 이상·자료관에는 1인 이상의 기록물 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되, 2004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함(안 제10조 및 안 부칙 제2항).
- 라. 국회기록물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11조).

국회기록물관리규칙안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)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사무처의 국회기록보존소로 한다.
- 제3조(자료관의 설치) ①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(이하 "소속기관"이라 한다)에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료관을 두되,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기록보존소가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한다. ②자료관은 소속기관의 총무과에 설치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4조(관리대상기록물) 소속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등록·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소속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
 - 2. 국회의 제도·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·검토서,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
 - 3. 국회의장·부의장·위원회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주요업무활동 관련 기록물
 - 4. 기타 국회기록보존소장이 국회기록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

- 제5조(기록물관리) ①소속기관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에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, 그 보존기간·방법·장소 및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소속기관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에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한 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생산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소속기관은 규정이 정하는 기간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.
- 제6조(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)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 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전산으로 목록을 작성·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7조(보상기준)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전문감정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,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기록보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8조(기록물의 폐기) 기록물의 폐기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행한다.
- 제9조(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)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- 제10조(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)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.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- 2.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국회사무총 장이 정하는 1년 이상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- 3. 기록물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1 년 이상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- ②국회기록보존소에는 2인 이상, 자료관에는 1인 이상의 기록물관리전 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) 국회기록물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를 두되,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직명 및 직인의 사용)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및 이 규칙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부여한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 및 국회도서관직제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명 및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.
- 제13조(위임규정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기록 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은 2004년말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본다

1

[별표]

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

구 분		자료관	국회기록보존소	
	서고 고정식 면적 이동식		1만권당 99㎡ (장비 및 열람석 면적은 별도임)	
1. 시 설			고정식 면적의 40퍼센트	
2. 장비	ファファ	1 21 11	·	항온·항습설비,
	공기조화설비			공기청정장치
	자기온습도계		· ·	서고당 1대
	소화설비	가스식 휴대형소화기	가스식	
			자동소화시설	
	보안장치			폐쇄회로감시장치
	탈산처리장비			설 치
	소독처리장비		·	설 치
3. 온 · 습	온도(℃)			18~22℃
도조건	숩도(%)			40~55%
E3:4 1				(변화율은 10% 이내)
	주전산/	7]	설 치	설치
	광디스크			설치
4.전산	광디스크			= 1
장비				설 치
	입력장!		λ-1 →1	서 귀
	통신장		설치	설치
	열람장	31	설치	설치
5.마이크	촬영기			설치
로필름	현상기			설 치
장비	판독복/	사기	설 치	설치

- 비 고 : 1. 자료관의 전산장비의 기준은 당해 기관안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전산장 비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.
 - 2. 국회기록보존소의 마이크로필름 관련장비중 판독복사기외의 장비는 민 간용역으로 처리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